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6. 24 선고 2021가단217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10.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5. 25. 접수 제23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67198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1) 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4. "피고는 원고에게 6,572,961원 및 그 중 1,590,238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11. 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17. 10. 17.

사망하였고, 피고 및 C, E, F, G, H이 망 D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8. 5. 25. 접수 제23986호로 2017. 10.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10. 17.자 협의분할을 '이 사건 분할협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의 실질이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포기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즉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임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재산에 대한 일종의 계약으로 불요식행위인바 그 목적 및 요건, 효과, 법적성질이 다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와 상속포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 C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위 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6. 9. 28.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C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포기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C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충주시 J, K에 있는 L아파트 M동

[도로명주소] 충주시 N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아파트

1층 968.20㎡

2층 내지 14층 각 944.40㎡

지층 968.2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충주시 J 대 9,670㎡

2. 충주시 K 대 5,80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O호 철근콘크리트조 84.3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5,479분의 41.53

2 소유권대지권 15,479분의 41.53

1) 원고가 주식회사 I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한다.